

수원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나5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국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지연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10. 29.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 30. 선고 2018가단6908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7. 12. 20. 체결된 금형 40벌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11,827,052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27,0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C과 피고 사이에 2018. 9. 체결된 금형 33벌에 관한 인도 약정을 11,827,052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27,0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C’을 ‘C’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12. 20. 이 사건 금형을 피고에게 대물변제하는 사해행위를 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였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 11,827,0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11,827,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선택적으로,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9.경 피고에게 금형 33벌을 인도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위 인도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11,827,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C은 2017. 12. 20. 이 사건 대물변제를 하고 2018. 9.경 금형 33벌을 인도할 당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변제금,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금형제작 설비와 110벌의 금형,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E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F에 대한 2016. 12. 5.자 차용증과 2017. 9. 15.자 차용증에 따른 채무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중복된 것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와 2018. 9.경 인도약정 무렵 C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고, C과 통모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를 받거나 금형 33벌을 인도받은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된 2017. 12. 20.경 원고는 C에 대하여 11,827,052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C의 채무초과 상태

1) 인정사실

제1항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2017. 12. 20.경 E에 대한 금형제작대금채권 1,026,728,000원 중 599,821,100원을 이미 지급받아 426,906,900원의 잔여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② 한편 C은 당시 H에 대하여 36,171,500원, I에 대하여 37,320,8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11. 25.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금형부품을 공급한 J에 대하여는 56,830,400원(2017. 12. 31.자 617,100원은 이 사건 대물변제 이후의 내역이므로 제외함)의 물품대금채무를, 2016. 6. 23.경부터 2017. 7. 7.경까지 금형부품을 공급한 K에 대하여는 23,306,5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③ 또한 C은 L로부터 2014. 8. 31.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175,031,010원 상당의 금형부품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중 117,427,950원만 변제하여 57,603,06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M으로부터 2016. 4. 30.경부터

2017. 8. 4.경까지 금형부품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42,299,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극재산에 관하여

(1) 피고는 C이 이 사건 대물변제 직전에 E으로부터 2017. 11. 10.경 165,211,200원을, 2017. 12. 10.경 81,760,000원을 각 변제받아 246,971,200원(= 165,211,200원 + 81,760,000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2017. 12. 20.경 246,971,200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C이 2016. 6.경 E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E에 대한 33,52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E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것을 넘어 C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2017. 12. 20.경 E에 대하여 33,52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C이 보유하고 있던 금형제작 설비의 시가가 적어도 80,000,000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는 C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직후인 2018. 1. 12. H에게 물품대금 1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 금액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8. 1. 12. H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2017. 12. 20.경 위 금액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는 C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2017. 12. 20.경 1,026,728,000원 상당의 금형 110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C의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한다.

C이 2017. 4.경부터 2017. 12.경까지 E으로부터 금형 110벌의 제작을 의뢰받아 금형 110벌을

제작하였고, 금형제작대금 1,026,728,000원 중 599,821,1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E에 대하여 나머지 금형제작대금 채권을 가지는 한편 E에게 금형 110벌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C의 E에 대한 나머지 금형제작대금 채권 426,906,900원을 C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한 이상 E에게 인도하여야 할 금형 110벌을 C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C으로부터 금형제작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 9. 초순경 C에게 금형 110벌 중 피고가 납품한 금형 33벌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7. 9. 하순경부터 2017. 10. 경까지 위 금형 33벌을 돌려받았다고 하므로, C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2017. 12. 20. 경 금형 110벌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형 110벌을 C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는 C이 2017. 12. 20. 경 G에 대하여 합계 132,201,06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21, 2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G이 C으로부터 금형을 공급받아 2018. 1. 18.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면서 액면금 58,041,06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② E이 2018. 4. 경 G에게 ‘G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53,790,000원을 E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과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이 C에게 세금계산서와 약속어음을 발행한 2018. 1. 18.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점, ② G 대표이사 N는 E이 2018. 4. 경 G에 청구한 53,790,000원은 C 대신 금형을 육성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어서 C이 G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무렵 G에 대하여 합계 132,201,06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는 C이 E에 대하여 추가로 270,000,000원의 금형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극재산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C은 2016. 12. 5. 피고에게 차용금 34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그 후 피고에 대한 채무가 450,499,950원(= 차용금 채무 224,499,950원 + 금형제작대금 채무 226,000,000원)에 이르게 되자 2017. 9. 15. 차용금 45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편의상 위 각 차용증의 채권자로 피고가 아닌 피고의 직원 F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위 각 차용증상 차용금 채무와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서로 중복된 것이므로, 이를 별개로 보아 C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13,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 12. 5.자 차용증과 2017. 9. 15.자 차용증의 채권자는 모두 F으로 명기되어 있고, F이 피고의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차용증의 채권자를 F이 아닌 피고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2017. 9. 15.자 차용증에는 2016. 12. 5.자 차용증을 대체하는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기재가 없고, 2016. 12. 5.자 차용증에도 2017. 9. 15.자 차용증과 중복된 것으로 2017. 9. 15.자 차용증이 작성됨으로써 2016. 12. 5.자 차용증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각 차용증의 차용금 채무와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서로 중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채무초과

위 1)항과 2)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E에 대한 426,906,900원의 금형제작대금채권 정도 밖에 없었던 반면, 그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에 대한 122,764,750원(= 584,460,000원 - 461,695,250원)의 차용금 채무, F에 대한 2016. 12. 5.자 차용증에 따른 34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 2017. 9. 15.자 차용증에 따른 4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 합계 912,764,750원과 원고 및 H, I, J, K, L, M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합계 265,358,312원(= 원고 11,827,052원 + H 36,171,500원 + I 37,320,800원 + J 56,830,400원 + K 23,306,500원 + L 57,603,060원 + M 42,299,000원)이 있었던 것이므로, C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를 하였으므로,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를 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을 알면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통모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형을 포함한 금형 110벌은 피고와 E 사이의 약정에 따라 E에게 인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은 11,827,052원이고,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금형의 가액은

228,8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피보전채권 11,827,0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1,827,0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선택적으로 금형 33벌에 관한 인도 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하는 이상 선택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김정운, 판사 김재학